

사체유기를 위한 방화

화재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첫째로 사상자 자신이 화기(火氣)나 인화물 같은 연소 확대가 용이한 가연물의 취급을 잘못함으로써 화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소·유아의 경우는 불장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로 분신자살했을 가능성, 세째로는 살해 또는 치사케 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했을 가능성 등으로 화재원인을 밝히게 된다.

또 개나 고양이, 쥐 또는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 등의 사상(死傷)역시 급속 발염의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화재원인 조사의 귀중한 자료를 주는 경우도 많다. 사상의 형태는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나 그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연탄난로과열(?)로 전라의 여인이 소사되었다는 제하로 도하 신문은 물론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화재사건이 있었다.

현장은 소사자(김여인, 접대부로서 당시 31세)가 세들어 살고 있는 목조 단층 무허가 건물(방 3평, 부엌 1평 가량)로서 소사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이 누운



송재칠
<화재조사전문가>

채 죽어있었지만 작은 목조 건물 임에 비해서는 소훼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전라(全裸) 운운 했으나 실제 연소(延燒)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의 노출부분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어서 쉽게 나체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약소(弱燒)된 현장인데도 사체가 반듯이 누운 채 연소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해 사체를 뒤집어 본 결과 사망전에는 착의상태가 분명하였고 소잔(燒殘) 의류와 침구인 스폰지 3단요에서는 심한 석유냄새가 풍겼다.

부엌에서 석유통을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고 방안의 소락물(燒落物)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20ℓ들이 플라스틱제 석유통의 뚜껑이 열린 채 용융된 상태로 방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사진1)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체의 기도(氣道)에서 매연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死因)은 경부(頸部) 압박질식사로 판명됨으로써 살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방화로 판단하고 조사를 계속한 끝에 치정관계로 김여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연하의 애인인 10대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객담이 되겠지만 이 10대의 범인 B는 근처 암자에서 보살로 있는 어머니밑에서 자라오면서 동네를 배회하다가 접대부인 김여인을 알게 되었고 무슨 때가 되면 암자에서 떡같은 음식들을 갖다주면서 친히 지내다가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암자마슬인 50대의 K씨가 또죽은 김여인의 단골손님인데서 문제가 발단되었던 것이다.

범인B의 친구인 L군이 B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김여인집에 있지않을까하고 들르게 되었는데 낮은 창문을 들여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것은 대낮 김여인이 B군집 50대 머슴과 같이



사진1. 소락물을 발굴한 방바닥에서 채취된 뚜껑이 열린 상태의 플라스틱제 석유통 잔조물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분주히 B를 찾았다던 L군은 B를 만나 김여인 집에서의 김여인과 머슴과의 관계를 목격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흥분하게 된 B군은 곧장 김여인 집을 향해 뛰었던 것이다. 김여인을 만난 B는 숨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누나 그럴 수 있어”하면서 따지기 시작했고 김여인은 네 까짓게 뭔데 남에 일에 간섭이나 하면서 헐난하는데 분이 폭발한 B는 평소의 유도 유단자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김여인을 쓰러트려 목을 조른 것이 그대로 숨이 끊긴 것이다. 당황한 B는 김여인의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들어와 3단요 위에 뉘어진 김여인 시체위에 석유통을 몽땅 들어 붙고 성

낳을 그어대 방화를 했던 것이다.

범인 B는 은폐사실이 간단히 넘겨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화재현장 조사가 그렇게 치밀하게 더구나 사체의 부검까지 진행 되리라곤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름이 뿌려져 건물이 홀랑 다타버렸어도 현장에 유징(油徵)이 남거나 채증된다는 것이 화재 현장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일반인으로는 잘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화재현장에서의 화재 원인이나 연소현상 등의 특징을 찾아 내는 것이 화재현장조사의 독특한 영역인 것이다.

김여인사건이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주택가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 주부가 부엌에서 변사

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다.

한여름 초저녁에 발생한 일반 주택화재는 도심의 소방관들이 집을 홀랑 태워 버릴 정도로 놔두지는 않았다.

사체가 재래식 부엌의 타일 바닥에 있는 채 주수(注水)되어 하수구는 막혀있었으며 초기 화열로 사체의 상측 의류들은 타서 없어졌지만 바닥쪽에 잔재(殘在)된 의류 조각에는 기름이 침윤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화재전 기름을 뿌리고 점화한 것이 출동한 소방차의 주수에 의해 진화됨과 동시에 유징이 보존된 것이다.

섬유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기름이 침윤될 수 없지만 역시 기름에 침윤된 섬유에도 물이 침투할 수 없다는 물과 기름의 비중 특성 때문이다.

사체 의류에 침윤된 유징을 근거로 조사끝에 남편이 부부싸움 중 부인을 치사케 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불을 지른 직후 남편인 범인은 자기가 자주 들리는 친구 점포에 급히 들러 친구에게 대뜸 내가 술 살테니 나가자고 손목을 불잡고 나와 자기 집앞 골목쪽 방향으로 가면서 “어, 저기 연기아냐?” 하면서 화재최초 목격의 동반자로서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했던 점은 많은 사건들이 그렇듯이 강력범죄이면서도 지능적인 방화사건에서는 특히 많이 나타난다. ◎◎